2016년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매뉴얼

보건복지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CENTRAL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목 차

Ⅰ 2016 부모모니터링단 사업 이해

1.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1
2. 사업 취지 및 목적 ····· 2
3.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 3
4. 부모모니터링단 사업 운영절차 ····· 5

Ⅱ 부모모니터링단 활동

1. 부모모니터링 활동방법 ····· 6
2. 컨설팅 활동방법 ····· 9

Ⅲ 부모모니터링 지표 해설

1. 부모모니터링 지표의 근거 및 방향 ····· 11
2. 부모모니터링 세부 지표 해설 ····· 11
   1) 건강관리 ····· 16
   2) 급식관리 ····· 23
   3) 위생관리 ····· 32
   4) 안전관리 ····· 43

Ⅳ 서식

1. 부모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60
2. 컨설팅 결과보고서 ····· 67

Ⅴ 부록 - 주요개정사항

1. 2016 부모모니터링단 지표 주요 개정사항 ····· 69

Ⅰ. 2016 부모모니터링단 사업 이해

1.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무상보육 이후 어린이집에서의 보육이 증가하여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 요구 대두
-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영양, 건강, 안전 등과 관련된 사고 방지 필요

❍ 부모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공무원 중심의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달리 수요자인 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
-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 질 높은 보육환경을 위한 모니터링과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통해 어린이집 지원
-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에 대한 부모의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여 부모의 참여와 어린이집의 개방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능 수행

❍ 어린이집 참관 위주의 모니터링 뿐 아니라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 중심의 체계 구축
- 부모와 전문가가 함께 모니터링을 실시, 사후 컨설팅 연계

❍ 보육서비스 제공자(어린이집)와 수요자(부모) 간의 소통 강화를 통해 어린이집과 부모 간 신뢰를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실현 가능

- 2013년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 사업으로 시작
  * ’13.5.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항 신설, 법적 근거 마련
- 2014년 '부모모니터링단' 사업 실적
  전국 230개 시군구에서 총 27,169개소 어린이집 모니터링
  부모 892명, 보육·보건전문가 669명 참여
- 2015년 '부모모니터링단' 사업 실적
  전국 230개 시군구에서 총 27,984개소 어린이집 모니터링
  부모 845명, 보육·보건전문가 731명 참여

2. 사업 취지 및 목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및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실현

❍ 부모와 보육·보건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제공하여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 부모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에 대한 우수 운영사례 발굴 및 전파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부모모니터링단)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하기 위하여 부모, 보육·보건 전문가로 점검단(이하 이 조에서 "부모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부모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집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 모니터링
2.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3. 그 밖에 보육 관련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부모모니터링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부모모니터링단은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부모모니터링단이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어린이집의 원장 등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부모모니터링단은 공무원이 제42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공무원과 함께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 교육, 비용 지원 및 직무 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 운영 주체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또는 시군구청장이 운영하되 모니터링단 교육, 컨설팅 등 사업의 일부를 관할 시도단위로 시행 가능

  * 시군구 단위로 운영할 경우, 해당 시도의 운영계획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모니터링의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단원에 대한 교육은 시도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여야 함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모니터링 대상

○ 관할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 선정

- 모니터링 신청이 있는 어린이집
- 최근 3년간('13~'15) 지도·점검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

  * 평가인증(재인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어린이집은 제외

- 전년도 모니터링 실시 어린이집 중 컨설팅 대상 어린이집(컨설팅 사후조치 확인 등)
- 언론(방송, 인터넷, 신문) 보도 또는 보육과정 중 사고 발생 어린이집

  * 차량 사고, 급식 부실, 아동학대, 어린이집내 안전 사고 등

- 최근 3년 이내 지도·점검에서 1회 이상 급·간식 및 안전관리 등 부적정 사유로 지적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등

□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 부모 및 보육·보건전문가를 1:1로 하며, 2인 1조로 구성

○ 컨설턴트는 2차 사후 컨설팅 진행

○ 모니터링단원은 공모 절차(기관 홈페이지, 소식지, 반상회보, 보육포털사이트 등)에 의거하여 신청자를 모집하고 선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함을 원칙으로 함

* 단, 지역특성상 공모 절차에 의한 모집이 어려운 경우 예외(예:읍면 도서지역 등)

* 모니터링단원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해촉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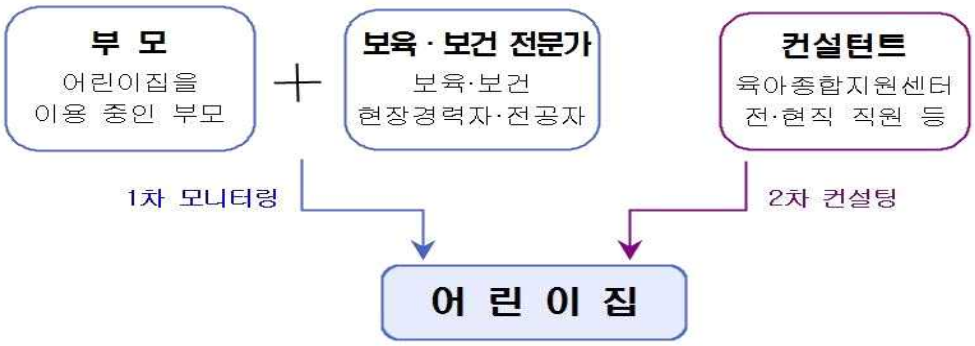

○ 선정기준

구분	선정요건
보육전문가	ㅇ 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자로서 보육현장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ㅇ 전직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요원 또는 컨설턴트로서 경력 1년 이상인 자 ※ 현직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자 제외 ㅇ 영유아보육 관련학과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등
보건전문가	ㅇ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영양사(임상영양사 포함), 간호사,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포함) ㅇ 보건 관련학과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등
부모	ㅇ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둔 부모 ㅇ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부모
컨설턴트	ㅇ 전, 현직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및 평가인증 담당 보육전문요원 ㅇ 전직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양사, 컨설턴트 ㅇ 전직 보육교사.원장으로 평가인증 1회 이상 수행자로 인증점수 90점이상인자 (보육교사 1급, 보육업무경력 5년이상인 자)

□ 부모모니터링단원 교육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반드시 2회 이상 다음 내용을 교육

- 부모모니터링단 사업의 취지 및 목적
- 모니터링에 임하는 자세 및 태도
-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 등 지표에 대한 설명 등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 관련 내용

○ 시도지사는 직접 주관하여 교육 실시하거나 직접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에 교육강사를 파견하는 등 모니터링이 지역 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

○ 시군구청장은 기본교육 외에 필요한 경우 모니터링단원을 대상으로 간담회, 소그룹 모임 등을 운영할 수 있음

4. 부모모니터링단 사업 운영절차

구분	주요 내용
부모모니터링단 모집, 구성, 교육	· 부모모니터링단 모집 공고 및 선정 · 부모모니터링단 구성(부모, 보육·보건전문가), 모니터링 신분증 제작 · 부모모니터링단 교육(이론교육, 필요시 현장실습)
어린이집 선정 및 부모모니터링단원 배치	· 부모모니터링 대상 어린이집 선정 · 부모모니터링단원 어린이집 배치 (부모와 보육·보건전문가 2인 1조 구성)
모니터링 실시	· 부모모니터링단원 : 어린이집 방문 일자 사전 협의(방문 3일전까지) · '부모모니터링단 신분증' 및 '어린이집 모니터링 승인서' 지참 후 어린이집 방문 · 어린이집 모니터링 진행(모니터링 지표 근거) · 모니터링 진행 시 현장개선지도 · 부모모니터링단원 및 어린이집 원장 상호 서명 받기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후, 시도청 또는 시군구청에 제출 *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시, 센터에 제출 · 활동결과보고서는 사본 등으로 3일 이내 제출(추후 원본제출) · 아동학대 등 긴요한 사항은 보육담당공무원 등에게 즉시 보고
교육 및 간담회	· 모니터링 실시 중간에 모니터링단원 대상의 교육 또는 간담회 등 진행
컨설팅 의뢰 및 실시, 결과보고	· 어린이집 요청 또는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지자체)이 되는 경우 컨설팅 진행 · 모니터링 지표에 근거하여 전문컨설턴트가 진행 ·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출(시도 또는 시군구청)

Ⅱ. 부모모니터링단 활동

1. 부모모니터링 활동방법

□ 모니터링 준비

○ 모니터링 어린이집 확인

- 시도 및 시군구청(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선정한 어린이집 명단 확보
- 부모와 전문가가 함께 어린이집 명단을 확인하고 모니터링 일정 계획
  * 1일 2개소 원칙이나 어린이집 위치에 따라 조정 가능
  * 2개소 방문 시에도 '급식 또는 간식'은 꼭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간 배정

○ 어린이집 방문 일정 협의

- 모니터링 실시를 위하여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대표자나 원장 등 관계인과 일정 사전협의(방문 3일 전까지) 후 방문

○ 어린이집 찾기

- 어린이집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방문(주차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음)
  * 다만, 지역에 따라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원활하지 않은 경우는 자가 이용
- 사전에 어린이집이 위치한 곳을 상세하게 확인 방문
  *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http://www.childcare.go.kr/) 어린이집 찾기(위치검색서비스)

□ 모니터링 진행

○ 부모모니터링단 신분증 및 어린이집 모니터링 승인서 제시

- 모니터링단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어린이집에 출입하여 모니터링을 수행. 이 경우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어린이집의 원장 등 관계자에게 제시
  * 다만, 관계 공무원이 함께 출입할 때에는 승인서를 생략할 수 있음

○ 모니터링 안내하기

- 어린이집 현관 입구에서 도착을 알린 후 안내를 받아 입실
- 원장실 또는 사무실에서 원장 등 보육교직원에게 모니터링 내용 안내 및 협조 당부, 간략하게 모니터링 지표 소개

<예시>
안녕하세요? 부모모니터링단 000입니다. 모니터링에 앞서 모니터링 항목과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 모니터링 점검 영역은 건강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안전관리 모두 네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점검 방법은 항목에 따라 문서 및 관찰, 보육교직원 면담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약 00분에 걸쳐 모니터링을 시작하겠습니다.

❍ 모니터링 실시

- 건강·급식·위생·안전 분야 등의 지표별 모니터링 실시. 지표에 따라 관찰과 면담, 문서 등의 확인방법 준수
- 각 모니터링 지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결과를 우수, 보통, 미흡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 모니터링 도중, 지표에서 안내가 가능한 부족 사항은 보육·보건전문가가 바로 현장개선지도 실시. 지표의 기준과 지침을 근거로 하여 설명하고 자율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어린이집 이의제기 사례가 없도록 주의)
- 부모는 관찰과 면담 등을 통해 전문가와 함께 모니터링을 하되,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 전문가와 협의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전문가로 하여금 전달

  * 부모 개인의 의견을 보육전문가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않도록 유의
- 모니터링 실시 중, 건강·급식·위생·안전·학대 등과 관련하여 아동의 피해가 우려되어 즉시 조치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 경우, 해당 시군구 보육담당공무원(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반드시 당일 통보

<모니터링 일과 진행 예시– 1개소 기준>

소요 시간 (총 3시간)	모니터링단 활동 내용
30분	°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과 인사 ° 어린이집의 전체 분위기 및 현황 파악 ° 모니터링 지표항목 및 점검방법 안내
120분	° 건강관리 모니터링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응급조치 체계)
	° 급식관리 모니터링 (식단 및 영양 관리, 조리관리, 식재료 관리)
	° 위생관리 모니터링 (급식 위생관리, 조리실 청결, 시설·비품 위생)
	° 안전관리 모니터링 (물리적·인적 환경 안전관리, 차량 안전관리,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
30분	° 관찰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단 상호 논의(평가) ° 원장(부재 시 주임교사 등 보육교직원)에게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안내하며 향후 조치사항을 협의(결과보고서 서명받기)

*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시간 조정 가능

○ 모니터링 종료

- 모니터링 후 빠진 항목과 지표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원장 등 보육교직원에게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모니터링 진행
-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또는 보육교직원) 확인한 후 결과보고서 앞면에 어린이집 원장 확인 서명

  * 원장의 확인 서명을 원칙으로 하며,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임교사 등이 대리 서명할 수 있음

- 모니터링 결과 확인 후, 사후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

  * 시군구청 등의 판단에 따라 컨설팅이 진행될 수 있음

- 모니터링이 끝났음을 알리고, 궁금한 사항 등에 대해 질의응답 후 마무리 인사

<예시>
모니터링을 모두 마쳤습니다.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모니터링 과정 중 안내해 드린 사항은 꼭 확인하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모니터링 보고

○ 결과보고서 작성

- 모니터링 현장에서 작성한 결과보고를 바탕으로 작성하며, 총괄의견과 특이사항 등을 추가로 기재

  * 부모와 전문가가 협의하되, 전문가가 직접 작성

- 모니터링 현장에서 결과보고서의 문항에 바로 확인사항 표시

<결과보고서 작성 예시>

항목	관찰 내용	평가(√)			현장개선지도	비고
		우수	보통	미흡		
1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①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필수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을 안내한다.	(2)	(1)√	(0)	필수예방접종 정보 보호자에게 안내	
	②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건강검진을 연1회 실시하고, 그 증빙서류를 보관한다.	(2)√	(1)	(0)		

* 현장개선사항과 관련된 부분을 '현장개선지도'에 간략 기술

* 기타 보고사항이 있는 경우 '비고'에 작성

<결과보고서 총평 예시>

총괄 의견	* 우수한 영역 또는 미흡한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기재 - (우수) 출입문에 손끼임 방지장치 설치 양호 - (미흡) 조리직원의 위생복과 위생모 등 착용 미흡 * 어린이집 모니터링 이후 전반적인 총괄 의견 -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안전관리는 우수하나 식자재 및 조리직원 위생 등 위생관리 영역이 미흡함
특이 사항	*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사항이나 아동학대 등이 의심되거나 발견되는 등의 위급한 상황 기재 - 놀이 시설물 등 아동상해 위험 즉시 제거 필요 - 아동학대 사실 발견 - 변질된 식자재를 보관하여 아동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차량 안전관리 미이행으로 아동에게 위험한 상황인 경우 등

○ 결과보고서 보고

- 결과보고서 작성 후 시군구청 보육담당공무원에게 제출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 센터로 제출
- 사본 등으로 3일 이내 제출(추후 원본제출)하되, 아동학대 등 긴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
- 모니터링 결과,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 지도점검 담당공무원에게 해당사실을 통보

2. 컨설팅 활동방법

□ 컨설팅 준비

○ 컨설팅 어린이집 선정

- 어린이집의 컨설팅 자율 신청
- 모니터링 결과 심도 깊은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어린이집과 협의하여 어린이집 선정
  * 시도 및 시군구청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논의 후 판단

○ 어린이집 방문 일정 협의

- 컨설턴트는 컨설팅 실시를 위하여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대표자나 원장 등 관계인과 일정 사전협의(방문 3일 전까지) 후 방문

> <예시>
> 안녕하세요? 컨설턴트 000입니다. 부모 모니터링 실시 후 00어린이집의 컨설팅이 필요하여 전화 드렸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식자재 관리'와 '아동학대예방 및 조치' 항목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장 방문을 통한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언제 방문하면 좋을까요?

- 1일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컨설팅하며, 컨설팅 점검 내용에 따라 컨설팅 어린이집 개소 수 조정 가능

○ 컨설팅 어린이집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확인

- 시·도 또는 시·군·구 보육담당공무원은 모니터링단이 제출한 컨설팅 대상어린이집의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컨설턴트에게 전달
-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통해 어린이집의 컨설팅 필요 지표 확인

□ 컨설팅 진행

○ 어린이집 방문

- 어린이집 현관에서 원장이나 보육교직원의 안내를 받아 방문

○ 컨설팅 실시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필요한 항목에 대해 컨설팅 실시
- 어린이집 요청에 따라 미흡 항목외의 분야에 대해 컨설팅 실시 가능
  * 다만, 모니터링 지표 범위 내에서 컨설팅 실시
- 모니터링 항목에 따라 컨설팅 결과를 간략하게 기술
- 컨설팅 결과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또는 보육교직원) 확인한 후 결과보고서 앞면에 어린이집 원장 확인 서명

□ 컨설팅 보고

○ 컨설팅 결과보고

- 컨설팅 현장에서 작성한 결과보고를 바탕으로 작성하며, 컨설팅 항목 수와 총괄 의견 등을 추가로 기재
-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시도 및 시군구청 보육담당공무원에게 제출

  *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시, 센터에 제출

Ⅲ. 부모모니터링 지표 해설

1. 부모모니터링 지표의 근거 및 방향

❍ **영유아보육법 및 관령 법령, 보육사업안내 근거**

- 2016년 '부모 모니터링' 지표는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법령,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음
- 영유아를 위한 건강, 급식, 위생, 안전관리 4가지 영역 모니터링

❍ **부모, 전문가, 컨설턴트가 참여하는 모니터링**

- 투명하고 건강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부모와 전문가가 함께 모니터링을 실시. 모니터링 후 현장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컨설턴트가 직접 어린이집을 컨설팅하는 사후관리체계 연계

❍ **안전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지표 강조**

- 2016년 '부모모니터링단 사업'은 어린이집의 안전 및 아동학대 관련 지표 추가 및 비중 확대를 통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조함

2. 부모모니터링 세부 지표 해설

❍ 건강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안전관리의 4영역, 12항목, 39개 지표

* 지표에 따라 2점 또는 4점 부여

건강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안전관리
·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 응급조치 체계	· 식단 및 영양관리 · 조리 관리 · 식재료 관리	· 급식 위생관리 · 조리실 청결 · 시설·비품 위생	· 물리적 환경관리 · 인적 환경관리 · 차량 안전관리 · 아동학대 예방.조치

□ 건강관리

구 분	내 용	확인방법			
		문서	관찰	면담	확인자료
1.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① (2점)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필수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을 안내한다.	○		○	필수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안내자료
	② (2점)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건강검진을 연 1회 실시하고, 그 증빙서류를 보관한다.	○			보육교직원 건강검진 결과서
2.응급조치 체계	① (2점)영유아에게 위급상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응급의료기관 이송체계를 갖추고 있다.	○			응급처치동의서, 응급의료기관 연락망
	② (2점)사용기간 내의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비치하고 있다.		○		
	③ (2점)식중독 및 감염병 등이 의심되는 증상 발견 시 시군구청 보육담당부서 및 보건소에 신고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갖추고 있으며 신고한다.	○		○	감염병 등 관리대책
	④ (2점)영유아의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		○	식중독 및 감염병 안내자료

□ 급식관리

구 분	내 용	확인방법			
		문서	관찰	면담	확인자료
3.식단 및 영양관리	① (2점)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대로 제공한다.	○	○		식단표 (식단변동 시 기록)
	② (2점)간식이 오전과 오후로 다양하게 제공되며, 신선한 과일 및 채소 등을 주 3회 이상 간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			식단표
	③ (2점)음식의 조리(크기, 맛 등)가 영유아가 먹기에 적절하며, 충분한 양의 급·간식이 제공된다.		○		
	④ (4점)특별한 음식(식품 알레르기 등)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에게는 그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한다.	○		○	식품 알레르기 조사자료, 반영여부 기록
4.조리 관리	① (2점)급식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한다.		○		
	② (2점)당일에 조리한 음식은 당일에 소비하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	○	
5.식재료 관리	① (4점)식재료 보관규정(냉동·냉장·실온보관, 입고날짜,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고 있다.		○		
	② (2점)식단표상의 식재료는 원산지 표기대로 구입하고 있다.	○	○		식단표
	③ (4점)식재료 보관장소는 청결하고 위생적이며, 식품과 소모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		

□ 위생관리

구 분	내 용	확인방법			
		문서	관찰	면담	확인자료
6.급식위생 관리	① (4점)조리직원은 위생모, 위생복, 위생화 등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조리한다(장신구 착용 불가).		○		
	② (2점)급 · 배식 도구가 청결하고 급 · 배식과정이 위생적이다.		○		
	③ (2점)식수, 우유, 모유, 이유식 등 관리가 위생적이다(컵, 젖병 등을 소독 관리하여 청결하게 사용).		○		
7.조리실 청결	① (4점)조리실과 조리도구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		
	② (2점)칼과 도마를 어류, 육류, 채소류 별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		
	③ (4점)조리실에 후드나 환풍기, 냉·난방기, 방충망 등이 설치되어 있고, 제대로 작동하며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다.		○		
8.시설·비품 위생	① (2점)어린이집의 모든 공간(보육실, 현관, 복도, 계단, 화장실, 세면실)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다.		○		
	② (2점)보육실의 놀잇감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다.		○		
	③ (2점)영유아가 개별 침구를 사용하고, 청결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다.		○		
	④ (4점)영유아가 사용하는 수건, 칫솔, 칫솔컵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다.		○		
	⑤ (2점)쾌적한 보육실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기,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다.		○		

□ 안전관리

구 분	내 용	확인방법			
		문서	관찰	면담	확인자료
9.물리적 환경에 대한 관리	① (4점)실내외 시설 · 설비 및 놀이시설에 안전장치(끼임 방지, 모서리보호대 등)가 되어 있고, 위험요소가 없으며, 실내외 놀잇감이 영유아에게 안전하다.		○		
	② (2점)영유아가 사용하는 세면대 수도와 정수기 등에 화상위험이 없도록 안전조치가 되어 있다.		○		
	③ (2점)위험한 물건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		○		
	④ (2점)화재 등 긴급 사태를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가 잘 관리되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갖추고 있다.	○	○	○	비상시 대처방안
10.인적 환경에 대한 관리	① (2점)영유아 안전교육과 소방훈련을 계획하여 실시하고 있다.	○			안전교육·소방훈련 계획 및 실시기록
	② (2점)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안전교육 실시기록
	③ (2점)영유아 등·하원시 교사 및 보호자 인계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		귀가동의서
11.차량 안전관리	① (2점)어린이집의 모든 통학차량의 신고필증을 구비하고, 차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통학차량 신고필증 차량안전점검표
	② (2점)어린이집의 모든 통학차량은 차량안전설비(경광등, 차량용소화기, 차량용 구급상자, 개별 안전벨트 및 안전인증을 받은 영아용 보호 장구 등)를 갖추고 관리되고 있다.		○		
	③ (4점)차량운행 시 보육교직원이 동승하여 영유아를 안전하게 인도하고 있으며, 차량 안전수칙을 부착하여 숙지(등하원 지도 교직원과 차량운전자) 하고 있다.	○		○	차량안전수칙
12.아동학대예방 및조치	① (4점)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외부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기관 자체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기록
	② (4점)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을 알고 있으며, 아동 학대 발견 시 신고 및 상담전화를 이용할 줄 안다.			○	
	③ (2점)가정에서 아동권리존중(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해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가정통신문 등

1) 건강관리

1-①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필수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을 안내한다.

지표 설명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필수예방접종 및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안내를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영유아의 보호자로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예방접종을 한 자가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명자료를 제출받아 영유아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영유아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보호자를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건강진단)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생략할 수 있다.

확인 방법

문서, 면담

☞ 영유아의 필수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안내자료(가정통신문, 오리엔테이션 자료 등)

평정 기준

우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대한 정보나 자료를 보호자에게 안내하는 경우
보통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중 한 가지를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있지 않거나 그 내용이 매우 미흡한 경우
미흡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에 대한 안내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우

1-②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건강검진을 연 1회 실시하고, 그 증빙서류를 보관한다.

지표 설명

어린이집 모든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는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실시한 건강검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 보육교직원의 건강검진은 신규채용 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에 따르며, 그 외에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의한 일반건강검진으로 갈음
* 영양사, 조리사, 취사부는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건강진단(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으로 갈음 가능
* 보육실습생과 어린이집에서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자, 어린이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 특별활동 강사, 노인일자리 파견 파견자에 대해서도 건강검진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건소의 전염성 질환(간염, 결핵, 장티푸스 등)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로 갈음 가능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3조(건강진단)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거주자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보육교직원을 즉시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확인 방법 문서

☞ 보육교직원의 건강검진 결과서(신규 보육교직원은 채용신체검사서 등)

평정 기준

우수	모든(현원의 90%이상) 보육교직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증빙서류를 보관함
보통	일부(현원의 1/3미만) 보육교직원의 건강검진 누락
미흡	대다수(현원의 1/3이상) 보육교직원의 건강검진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

2-①	응급조치 체계
	영유아에게 위급상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응급의료기관 이송체계를 갖추고 있다.

지표 설명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함. 따라서 어린이집은 가까운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고 있거나, 응급의료기관 연락망, 응급처치 동의서(보호자 비상연락망, 의료기관명)가 비치되어 있어야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8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와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사고에 대비하여 보육 영유아에 대한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 갖춰 두어야 한다.

확인 방법

문서

☞ 영유아의 응급처치 동의서(보호자 비상연락망, 의료기관명)

☞ 응급의료기관 연락망 비치(눈에 잘 띄는 곳) 확인

평정 기준

우수	모든(현원의 90%이상) 영유아의 응급처치동의서(보호자 비상연락망, 의료기관명) 비치, 의료기관 연락망 비치
보통	의료기관 연락망은 비치하였으나, 일부(현원의 1/3미만) 영유아의 응급처치동의서(보호자 비상연락망, 의료기관명)가 누락된 경우
미흡	의료기관 연락망 미비치 또는 대다수(현원의 1/3이상) 영유아의 응급처치동의서(보호자 비상연락망, 의료기관명)가 누락된 경우

2-②	응급조치 체계
	사용기간 내의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비치하고 있다.

지표 설명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에 필요한 비상약품 및 간이의료기구 등을 비치해야 함. 어린이집 내의 모든 비상약품 등은 사용(유효)기간 내의 약품이어야 함

<비상약품 종류의 예시>

의료용 재료	외용제	주의 사항
붕대, 거즈, 소독솜, 삼각붕대, 탄력붕대, 칼, 가위, 핀셋, 반창고,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반창고, 부목류	과산화수소수, 베타딘, 항생제 외용연고, 근육용 마사지 연고, 화상용 바세린 거즈, 생리식염수, 벌레 물린데 바르는 연고	어린이집에서의 의약품 사용은 반드시 전문의사의 진료와 처방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비상약품의 종류는 예시로 이를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님

확인 방법

관찰

☞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의 보관 장소(영유아 손이 닿지 않는 곳) 확인

☞ 비상약품의 사용(유효)기간 확인

평정 기준

우수	비상약품 등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비상약품의 사용(유효)기간 준수
보통	안전한 장소 별도 보관 및 비상약품의 사용(유효)기간 준수 중 한 가지 미충족
미흡	안전한 장소 별도 보관 및 비상약품의 사용(유효)기간 준수 모두 미충족

2-③	응급조치 체계
	식중독 및 감염병 등이 의심되는 증상 발견 시 시군구청 보육담당부서 및 보건소에 신고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갖추고 있으며 신고한다.

지표 설명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 또는 보육교직원에게 식중독 및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 발견 시 즉시 시군구청 보육담당부서 및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함. 또한 어린이집은 식중독 및 감염병 발생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함

* 감염병 관리 대책 내용(예시): 감염병의 종류, 감염병에 걸렸을 때의 대처방법(보건소 등 연락망), 보육교직원에 대한 조치방법 등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 어린이집 거주자 및 보육교직원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보육사업안내 원장은 사고발생 24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대사고(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감염병 및 식중독 등 집단 질병, 화재, 침수, 붕괴 등 재난사고 등)는 사고발생 즉시 보고한다.

확인 방법

문서, 면담

☞ 보육담당부서 및 보건소 연락망이 포함된 구체적인 관리대책(안) 확인

☞ 식중독 및 감염병 등 발생 시 시군구청 및 보건소 신고 인지 여부

평정 기준

우수	보육담당부서 및 보건소 연락망을 포함한 구체적인 관리대책(안) 비치와 감염병 발생 시 신고의무사항 인지 모두 충족
보통	보육담당부서 및 보건소 연락망을 포함한 구체적인 관리대책(안) 비치, 감염병 발생 시 신고의무사항 인지 중 한 가지 미충족
미흡	보육담당부서 및 보건소 연락망을 포함한 구체적인 관리대책(안) 비치, 감염병 발생 시 신고의무사항 인지 모두 미충족

2-④	응급조치 체계
	영유아의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지표 설명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의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내용 및 방법을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 안내 내용(예시):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 방법, 감염병에 걸렸을 때의 대처방법 등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확인 방법

문서, 면담

☞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 안내 자료(가정통신문, 오리엔테이션자료 등)

평정 기준

우수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제시하는 식중독 및 감염병 안내 자료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
보통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제시하는 식중독 및 감염병 안내 자료가 있으나 그 내용이 미흡한 경우
미흡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제시하는 식중독 및 감염병 안내 자료가 없는 경우

2) 급식관리

3-①	식단 및 영양관리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대로 제공한다.

지표 설명

급식은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의하여 공급하되, 영유아 100인 미만 어린이집 경우에는 인근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식단을 사용할 수 있음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3조(급식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4조(급식관리) 별표8 원장등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양사(5개 이내의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두는 영양사를 포함한다)를 두고 있지 아니한 10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확인 방법

문서, 관찰

☞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
- 영유아 100인 미만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 활용 가능(식단표 출처 명확히 함)

☞ 식단표대로 급·간식의 제공 여부 확인
- 식단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운영일지 등에 기록·관리되어야 함

평정 기준

우수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대로 제공되며, 식단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있음
보통	대부분 식단표대로 제공되고 있으나, 식단 변동 시 관련 기록이 남아있지 않음
미흡	식단표가 없거나(영양사 미작성 포함), 대부분 식단표대로 식단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3-②	식단 및 영양관리
	간식이 오전과 오후로 다양하게 제공되며, 신선한 과일 및 채소 등을 주 3회 이상 간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표 설명

간식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제공하고, 신선한 과일 및 채소 등을 주 3회 이상 간식으로 제공하되 한 주에 동일 품명의 과일 및 채소를 제공하는 것은 지양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3조(급식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확인 방법

문서

☞ 간식을 1일 2회(오전과 오후) 제공하는지 확인(식단표)
☞ 주 3회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간식으로 제공하는지 확인(식단표)

평정 기준

우수	간식이 오전·오후로 제공되고, 신선한 과일 및 채소 등이 주3회 이상 제공
보통	간식이 오전·오후로 제공되나, 신선한 과일 및 채소 등이 주3회 미만 제공
미흡	간식이 오전·오후로 제공되지 않거나, 주로 인스턴트 음식이 제공 되는 경우

3-③	식단 및 영양관리
	음식의 조리(크기, 맛 등)가 영유아가 먹기에 적절하며, 충분한 양의 급·간식이 제공된다.

지표 설명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음식은 영유아의 건강을 위하여 너무 짜거나, 달거나, 맵지 않아야 하며 영유아가 먹기에 적절한 크기로 제공되어야 함. 또한 배식할 음식은 여분이 있어 더 먹기를 원하는 영유아에게 추가 배식이 가능해야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3조(급식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확인 방법

관찰

☞ 급·간식으로 제공되는 음식의 크기, 맛 등 확인
☞ 음식 여분이 있어 영유아에게 추가 배식이 가능한지 확인

평정 기준

우수	음식의 크기, 맛 등이 영유아 발달단계에 맞추어 제공되며, 충분한 양의 급·간식이 제공되고 있는 경우
보통	음식의 크기, 맛의 적절성이나 충분한 양의 급·간식이 제공되는 것 중 한 가지 미흡
미흡	음식의 크기, 맛 등이 영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급·간식의 양이 부족하여 추가 배식을 할 수 없는 경우

3-④	식단 및 영양관리
	특별한 음식(식품 알레르기 등)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에게는 그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한다.

지표 설명

보호자 면담 등을 통해 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여 급·간식 제공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제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근거

보육사업안내 기타 특별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에게는 보호자(부모 등)의 의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 입소시 보호자 면담 등을 통해 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여 급간식 제공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제공되지 않도록 주의

확인 방법

문서, 면담

☞ 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 여부를 조사한 기록 확인

☞ 영유아가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급간식이 제공되는지 기록 확인

평정 기준

우수(4점)	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급·간식에 반영하고 있는 경우
보통	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나 급식 반영이 미흡한 경우
미흡	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있지 않은 경우

4-①	조리 관리
	급식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한다.

지표 설명

원장 등은 영유아에 대한 급식을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여야 함. 다만,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유치원의 조리실을 함께 사용 가능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별표1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유치원의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4조(급식관리) 별표8 원장등은 영유아에 대한 급식을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사용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확인 방법

관찰

☞ 어린이집 조리실 등에서 급식 직접 조리 여부 확인

※ 다른 기관의 조리실을 이용할 경우, 시·군·구청장의 사전 승인 필요

평정 기준

우수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직접 조리하여 제공함
보통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직접 조리하지 않으나, 시설 내에서 조리가 불가능하여 그 사유와 대안을 마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미흡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직접 조리하지 않는 경우

4-②	조리 관리
	당일에 조리한 음식은 당일에 소비하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지표 설명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음식은 당일에 조리하여 당일에 소비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함.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하지 말아야하며, 영유아에게 제공된 음식은 손을 대지 않았다 하더라도 식사가 끝나면 모두 폐기되어야 함. 또한 배식 후 남은 음식은 폐기 처리하는 등 당일 내 모두 소비하여야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4조(급식관리) 별표8 원장등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확인 방법

관찰, 면담

☞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모두 폐기하는지 여부

☞ 당일 배식 후 남은 음식을 처리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냉장고 등)하는지 확인(전일 식단으로 확인)

평정 기준

우수	이미 제공되었던 음식을 재사용 하지 않고, 배식 후 남은 음식을 당일내에 소비함
보통	제공되었던 음식을 재사용 하지 않으나, 배식하고 남은 일부 음식(국 등)을 당일 내에 소비하지 않는 경우
미흡	이미 제공되었던 음식을 재사용 하는 경우

5-①	식재료 관리
	식재료 보관규정(냉동·냉장·실온보관, 입고날짜,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고 있다.

지표 설명

원장 등은 식재료의 입고 날짜를 기입하고 식품에 표시된 보관규정에 따라 냉동·냉장·실온 보관하며, 유통기한 무 표시 제품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아야 함 (배추 등 1차 농산물은 유통기한 무 표시 가능하나, 입고일 은 표시).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안 됨

* 단, 영유아가 섭취할 수 없는 커피, 건강기능식품 표기 제품 제외

❑ 근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별표1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식품등의 보관·운반·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4조(급식관리) 별표8 원장등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장등은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확인 방법

관찰

☞ 식재료 입고날짜 기입 여부, 보관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관(냉동, 냉장, 실온 등)여부, 유통기한 준수 여부 등 확인

- 해당 조리실(공공기관용, 사회복지관용, 유치원용 등) 내 모든 식자재포함
- 가정어린이집에서 살림을 병행하는 경우, 인가 공간 내 모든 식자재(살림용 포함) 포함

평정 기준

우수(4점)	모든 식재료의 보관규정을 준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보통	식재료 보관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물품이 3가지 미만인 경우
미흡	식재료 보관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물품이 3가지 이상인 경우

5-②	식재료 관리
	식단표상의 식재료는 원산지 표기대로 구입하고 있다.

지표 설명

영유아의 건강·안전 및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식단표에 원산지를 기재하여 공개하여야 함. 또한 공개된 원산지대로 식재료 등을 구입하여야 함

* 원산지 표시대상: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쌀, 배추김치,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 근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보육사업안내 모든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건강·안전 및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식단표에 원산지를 기재하여 공개하여야 함. 집단급식소로 신고·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식단표 작성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상품목의 원산지를 기재하여 공개. 집단급식소가 아닌 소규모 어린이집도 그에 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함

확인 방법

문서, 관찰

☞ 식단표상의 원산지 표기대로 구매 여부 확인(영수증 확인 안함)

평정 기준

우수	식단표에 지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기재하고, 그 표기대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보통	식단표에 지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기재하고 있으나, 일부 식재료를 표기대로 구입하지 않은 경우
미흡	식단표에 지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기재하고 있지 않거나, 대부분 식재료를 표기대로 구매하지 않은 경우

5-③	식재료 관리
	식재료 보관 장소는 청결하고 위생적이며, 식품과 소모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지표 설명

식재료 보관 장소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야 함. 식품과 소모품은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여건상 부득이 함께 보관할 경우에는 서로 섞이지 않도록 분리 보관하고 식품과 소모품의 품명, 용도 등을 표시함

❑ 근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별표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4조(급식관리) 별표8 조리실, 식품 등의 원료·제품 보관실, 화장실 및 침구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보육사업안내 식품과 소모품은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여건상 부득이 함께 보관할 경우에는 서로 섞이지 않도록 분리 보관하고 식품과 소모품의 품명, 용도 등을 표시

확인 방법

관찰

☞ 식재료 보관 장소에 곰팡이나 습기가 없이 청결한지 여부

☞ 식품·소모품의 구분 관리 여부

평정 기준

우수(4점)	식재료 보관 장소가 청결하고, 식품과 소모품을 분리하여 보관하고 있음
보통	식재료 보관 장소가 청결하지 않거나, 식품과 소모품이 분리·보관되지 않음
미흡	식재료 보관 장소가 청결하지 않고, 식품과 소모품이 분리·보관되지 않음

3) 위생관리

	급식 위생관리
6-①	조리직원은 위생모, 위생복, 위생화 등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조리한다(장신구 착용 불가).

지표 설명

조리사, 취사부 등 음식물의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은 위생모, 위생복(전용 앞치마와 전용 머릿수건 등 사용가능) 등을 착용하여야 하며,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아야 함. 또한 머리카락은 위생모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등 위생모와 위생복을 올바르게 착용하여야 함

* 단, 물기가 있는 바닥에서 조리 시 위생화 착용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4조(급식관리) 별표8 조리원 등 음식물의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은 위생복・앞치마・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의 조리 직원(영양사, 조리사, 취사부)은 작업 전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위생모, 위생복, 위생화를 착용(장신구는 착용불가)

확인 방법

관찰

☞ 조리 직원(취사부, 조리사, 영양사 등)이 위생모와 위생복, 위생화 등을 올바르게 착용하였는지 여부

☞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평정 기준

우수(4점)	조리 직원은 조리시 위생모, 위생복, 위생화 등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음
보통	조리 직원이 조리시 위생모, 위생복, 위생화 등을 올바르게 착용하였으나, 장신구를 착용함
미흡	조리 직원이 조리시 위생모, 위생복, 위생화 등을 착용하지 않음

6-②	급식 위생관리
	급·배식 도구가 청결하고 급·배식과정이 위생적이다.

지표 설명

급·배식 도구가 청결하여야 하며, 배식과정이 위생적이어야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4조(급식관리) 별표8 어린이집의 원장 및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조리·제공하는 보육교직원(이하 이 목에서 "원장등"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확인 방법

관찰

☞ 급·배식 전용도구의 위생상태 및 배식과정의 위생 상태(개별 음식별로 집게 또는 일회용 장갑을 사용하여 배식, 개별 식기 사용, 테이블 청결상태, 복장의 청결상태 등) 확인

평정 기준

우수	급·배식 도구가 청결하고, 급·배식과정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짐
보통	급·배식 도구 청결상태 또는 급·배식과정 위생이 한두 군데 미흡함
미흡	급·배식 도구 청결 및 급·배식과정 위생이 세 군데 이상 미흡함

6-③	급식 위생관리
	식수, 우유, 모유, 이유식 등 관리가 위생적이다(컵, 젖병 등을 소독 관리하여 청결하게 사용).

지표 설명

어린이집의 음용수는 상수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끓여먹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수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을 관리해야 함. 또한 우유, 모유, 이유식 등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사용하는 컵, 젖병 등의 청결이 유지되어야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4조(급식관리) 별표8 어린이집의 음용수는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끓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을 관리하여야 하며,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갖춰 두어야 한다.

확인 방법

관찰

☞ 정수기의 위생상태, 우유, 모유, 이유식의 관리상태 및 컵, 젖병 등 관리·소독상태 등 확인

☞ 우유와 모유는 냉장보관. 남은 우유 및 모유 폐기 등 확인

평정 기준

우수	식수, 우유, 모유, 이유식 등 관리가 모두 위생적이며, 컵·젖병 등을 청결하게 사용
보통	식수, 우유, 모유, 이유식, 컵, 젖병 등의 관리 중 한 두 군데 청결 상태가 미흡함
미흡	식수, 우유, 모유, 이유식, 컵, 젖병 등의 관리 중 세 군데 이상 청결 상태가 미흡함

7-①	조리실 청결
	조리실과 조리도구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지표 설명

어린이집 내 조리실은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함. 조리실 내부에는 거미줄이나 먼지 등이 없도록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조리도구의 청결을 위해 식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 용구를 정기적으로 세척·살균 및 소독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4조(급식관리) 별표8 조리실, 식품 등의 원료·제품 보관실, 화장실 및 침구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별표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4조(급식관리) 별표8 원장등은 식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세척·살균 및 소독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확인 방법

관찰

☞ 조리실 내(바닥, 벽, 천장 등) 청결 상태 확인

☞ 식기, 도마, 칼, 행주 등 주방 용구 세척, 살균 및 소독 여부 확인

평정 기준

우수(4점)	전반적으로 조리실 공간 및 조리도구가 청결하고 위생적임
보통	조리실 공간 및 조리도구의 청결·위생 상태가 한 두 군데 미흡함
미흡	조리실 공간 및 조리도구의 청결상태가 세 군데 이상 미흡한 경우

7-②	조리실 청결
	칼과 도마를 어류, 육류, 채소류 별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지표 설명

어류, 육류,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과 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4조(급식관리) 별표8 원장등은 식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세척·살균 및 소독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별표1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확인 방법

관찰

☞ 식재료별로 칼과 도마의 구분사용 확인

평정 기준

우수	칼·도마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함
보통	칼·도마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그 관리가 미흡함
미흡	칼·도마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

7-③	조리실 청결
	조리실에 후드나 환풍기, 냉·난방기, 방충망 등이 설치되어 있고, 제대로 작동하며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다.

지표 설명

조리실에는 후드나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고, 창문 등에는 벌레나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충망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함. 조리실의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한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후드나 환풍기, 냉·난방기 등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청소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해야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별표1 조리실은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기계 환기시설을 하여 청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며,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확인 방법

관찰

☞ 후드나 환풍기, 냉난방기, 방충망 등의 설치 여부,

☞ 정상적인 작동 여부 및 청결 상태 확인

평정 기준

우수(4점)	후드나 환풍기, 냉난방기, 방충망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청결하게 관리됨
보통	후드나 환풍기, 냉난방기, 방충망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거나 청결 상태가 한두 군데 미흡함
미흡	후드나 환풍기, 냉난방기, 방충망 등이 일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작동상태 또는 청결 상태가 세 군데 이상 미흡함

8-①	시설·비품 위생
	어린이집의 모든 공간(보육실, 현관, 복도, 계단, 화장실, 세면실 등)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다.

지표 설명

어린이집의 모든 실내 공간은 매일 청소하여 청결해야 함. 모든 실내 공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소독과 대청소를 실시하고, 현관, 복도, 통로, 계단과 창문 등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함. 모든 보육실의 바닥, 창문, 교구장, 사물함 뒤편 등의 청결 상태를 잘 유지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8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질환 감염 여부,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톱·발톱, 치아상태, 어린이집의 청소상태,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욕실 및 화장실의 청결상태, 세면도구 등의 위생상태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환기 및 청소 등을 하여야 한다.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의 교직원은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수시로 점검
-보육실, 교재교구실, 조리실, 놀이터 등 어린이집 청소상태
-욕실, 화장실, 세면도구 등의 청결 및 위생상태

확인 방법

관찰

☞ 모든 공간(보육실, 현관, 복도, 계단, 화장실, 세면실 등)의 청결상태 확인

평정 기준

우수	어린이집의 모든 공간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 경우
보통	실내 공간 중 청결하지 못한 곳이 한 두 군데 있는 경우
미흡	실내 공간 중 청결하지 못한 곳이 세 군데 이상 있거나 해충이 발견된 경우

8-②	시설·비품 위생
	보육실의 놀잇감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다.

지표 설명

보육실의 놀잇감은 자주 세척, 소독하여 청결함을 유지해야 함. 놀잇감에 이물질이 묻어있거나 먼지 등이 쌓여 있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특히 영아들이 자주 물고 빠는 놀잇감의 경우 더욱 자주 세척해서 관리해야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8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질환 감염 여부,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톱·발톱, 치아상태, 어린이집의 청소상태,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욕실 및 화장실의 청결상태, 세면도구 등의 위생상태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환기 및 청소 등을 하여야 한다.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의 교직원은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수시로 점검
-보육실, 교재교구실, 조리실, 놀이터 등 어린이집 청소상태

확인 방법

관찰

☞ 보육실 놀잇감의 청결상태 확인

평정 기준

우수	놀잇감 대부분이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 경우
보통	놀잇감의 일부가 청결하지 않은 경우
미흡	놀잇감의 대부분이 청결하지 않은 경우

8-③	시설·비품 위생
	영유아가 개별 침구를 사용하고, 청결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다.

지표 설명

영유아마다 개별 침구(이불, 베개, 요)를 사용하며, 침구는 정기적으로 세탁, 일광 소독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8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질환 감염 여부,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톱·발톱, 치아상태, 어린이집의 청소상태,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욕실 및 화장실의 청결상태, 세면도구 등의 위생상태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의 교직원은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수시로 점검
-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확인 방법

관찰

☞ 영유아마다 개별 침구(이불, 베개, 요) 사용여부, 침구의 청결상태 확인

평정 기준

우수	영유아가 개별 침구(이불, 베개, 요)를 사용하고 각 침구가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 경우
보통	영유아 개별 침구 중 일부(공동 요 사용, 이불과 베개는 개별)는 개별로 사용하지 않거나, 침구 일부가 청결상태가 미흡한 경우
미흡	영유아가 개별 침구(이불, 베개, 요 모두)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8-④	시설·비품 위생
	영유아가 사용하는 수건, 칫솔, 칫솔컵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다.

지표 설명

영유아용 수건과 칫솔과 칫솔컵은 사용 후 세탁 및 세척하고 청결하게 관리해야 함. 칫솔 관리시에는 영유아의 개별 칫솔이 서로 닿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소독기 사용 시에는 소독기를 청결하게 관리해야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8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질환 감염 여부,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톱·발톱, 치아상태, 어린이집의 청소상태,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욕실 및 화장실의 청결상태, 세면도구 등의 위생상태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의 교직원은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수시로 점검
- 욕실, 화장실, 세면도구 등의 청결 및 위생상태

확인 방법

관찰

☞ 영유아용 수건, 칫솔, 칫솔컵의 청결 상태 확인

☞ 소독기 사용 시 청결 상태 확인(소독기 사용은 의무가 아님)

평정 기준

우수(4점)	영유아용 수건, 칫솔, 칫솔컵이 모두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 경우
보통	영유아용 수건, 칫솔, 칫솔컵 중 청결하지 않은 항목이 하나 있는 경우
미흡	영유아용 수건, 칫솔, 칫솔컵 중 청결하지 않은 항목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

8-⑤	시설·비품 위생
	쾌적한 보육실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기,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다.

지표 설명

환기, 청소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고, 영유아가 생활하는데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야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8 어린이집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환기 및 청소 등을 하여야 한다.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위생관리를 위하여 환기, 청소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환경개선 등 주기적으로 공기질 정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

확인 방법

관찰

☞ 보육실 수시 환기 여부, 적절한 온도 유지 여부 확인

평정 기준

우수	환기, 온도를 모두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 경우
보통	환기, 온도 중 하나라도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는 경우
미흡	환기, 온도 모두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경우

4) 안전관리

	물리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9-①	실내외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에 안전장치(끼임 방지, 모서리 보호대 등)가 되어 있고, 위험요소가 없으며, 실내외 놀잇감이 영유아에게 안전하다.

지표 설명

어린이집의 시설·설비(출입문, 가구 등) 및 놀이시설에 손끼임 방지, 모서리 보호대 등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어린이집 내에 감전, 미끄러짐, 추락위험 등 위험요소가 없어야 함

영유아 놀잇감은 파손되거나 칠이 벗겨지지 않고 재질이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영아가 삼킬 가능성이 있는 물건이 없어야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별표1 비상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은 안쪽에서 잠길 우려가 없어야 하고, 밖에서 쉽게 열 수 있어야 하며,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는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아니하도록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책상, 의자 등 가구의 모서리는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된 것이나, 고무 등으로 모서리에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육실에 설치된 교구장, 수납장 등은 안전을 위하여 아래 부분에 무거운 비품을 보관하여야 하고,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건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무거운 물건은 너무 많이 쌓아 놓아서는 아니 된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8 각 놀이시설물에 대하여 적절한 점검 일정을 세워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놀이시설물의 볼트·너트 등 이음장치, 울타리, 구조물의 부식 여부 등은 매일 점검하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서로 맞물리는 놀이시설물의 경우 영유아의 신체 일부분이 놀이기구에 끼지 아니하도록 맞물림의 형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확인 방법

관찰

☞ 가구 등의 모서리가 매끄럽거나 모서리보호대 설치 여부

☞ 출입문, 창문 등에 안전장치(손끼임 방지 처리) 설치 여부

☞ 볼트와 너트 등 이음장치 상태, 출입문의 개폐 관리 확인

☞ 화장실, 계단 등의 바닥에 미끄럼 방지 처리
☞ 영유아 손이 닿는 곳의 전기콘센트 관리(안전덮개, 전선줄 정리 등)여부
☞ 놀잇감이 파손되어 날카롭거나 뾰족한 부분이 없는지, 칠이 벗겨져서 떨어지거나 묻어나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
☞ 영아가 사용하는 놀잇감의 크기(직경 3.5cm 이상)는 적정한지 등 확인

평정 기준

우수(4점)	실내외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이 안전하고 위험요소가 없으며, 실내외 놀잇감 파손 등이 없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경우
보통	실내외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 놀잇감 중 위험요소가 한 두 군데 있는 경우
미흡	실내외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 놀잇감 중 위험요소가 세 군데 이상 있는 경우

9-②	물리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영유아가 사용하는 세면대 수도와 정수기 등에 화상위험이 없도록 안전조치가 되어 있다.

지표 설명

영유아가 사용하는 세면대 수도의 온수량과 온수 온도조절에 대한 조치 및 정수기 온수사용에 안전조치가 되어 있어야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별표1 샤워설비, 세면설비 및 냉온수 공급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수도꼭지는 온수 사용 시 화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세정장치와 수도꼭지 등은 냉온수의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확인 방법

관찰

☞ 세면대 수도의 온수 온도가 영유아가 사용하기에 적절한지, 수도밸브 등이 뜨거워서 화상요인이 없는지, 정수기의 온수사용에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지 등 확인

평정 기준

우수	세면대 수도와 정수기 등에 화상위험이 없도록 안전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
보통	세면대 수도와 정수기 등에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곳이 한두 군데 있는 경우
미흡	세면대 수도와 정수기 등에 세 군데 이상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경우

9-③	물리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위험한 물건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

지표 설명

위험물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별도로 보관해야 함

*위험물 예시: 강력접착제, 목공용 본드, 글루건, 실험용 알코올, 살충제, 방향제, 구강세정제, 사료, 성인용 화장품, 침핀, 건전지, 칼, 송곳, 스테이플러, 가시 식물, 각종 세제, 세척제, 표백제, 나프탈렌, 변기 압축기 등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별표1 보일러 설비, 퓨즈박스(두꺼비집), 화기, 소독수, 살충제, 조리실의 칼·가위·포크·랩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아니하는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확인 방법

관찰

☞ 위험물이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별도로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

평정 기준

우수	위험물이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된 경우
보통	영유아의 손이 닿는 곳에 위험물이 한두 가지 있는 경우
미흡	영유아의 손이 닿는 곳에 위험물이 세 가지 이상 있는 경우

9-④	물리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화재 등 긴급 사태를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가 잘 관리되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갖추고 있다.

지표 설명

화재 등 긴급사태를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비상시 대처방안(대피요령, 비상시 보육교직원의 역할분담 등)을 마련하여야 함

* 긴급사태에 대비한 시설 및 설비: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비상구(비상구 유도등), 소화용 기구, 가스누설경보기,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 등(자세한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 1호 확인)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어린이집 설치기준) 별표1 ① 소화용 기구를 갖춰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은 비상시 양 방향으로 대피할 수 있어야 하며, 각 층별 출구 및 대피시설 등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생략). ③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며, ①부터 ③까지에서 정한 소방 및 화재 대피시설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관서는 그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통보한다. ④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제9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생략)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은 인근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에 의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함

확인 방법

문서, 관찰, 면담

☞ 화재 등 긴급사태를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의 설치 여부
☞ 정상작동 여부 및 비상구 앞 적재물이 없는지 확인
☞ 비상시 대처방안의 구체적인 수립(보육교직원 인지 여부 등)

평정 기준

우수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가 갖추어져 잘 관리되고 있으며, 비상 시 대처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
보통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의 설치·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한두 가지 있거나, 비상 시 대처방안이 구체적으로 작성(보육교직원 미인지 등)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미흡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의 설치·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세 가지 이상 있거나 비상 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10-①	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영유아 안전교육과 소방훈련을 계획하여 실시하고 있다.

지표 설명

어린이집의 원장은 「아동복지법」제31조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 영유아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방계획을 작성하고 매월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아동복지법 상 안전교육 종류: 교통안전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약물오남용교육, 재난대비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이외에 물놀이, 보행법 등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의 교육)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8호 어린이집의 원장은 소방계획을 작성하고 매월 소방훈련을 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아동복지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 영유아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에게도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의 장은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고, 소방 대피, 지진 대피, 폭설 대비 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재난 대비 훈련을 월 1회 실시. 어린이집의 장은 보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령의 안전교육 기준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함

확인 방법

문서

☞ 영유아 안전교육(3가지 이상) 및 재난 대비 훈련의 계획 및 실시기록 확인
- 소방훈련(재난 대비 훈련)은 매월 시행

평정 기준

우수	영유아 안전교육이 계획에 따라 다양하게(3가지 이상) 실시되고, 소방훈련을 월1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
보통	영유아 안전교육이 다양하게 실시되지 않거나(3가지 미만), 소방훈련을 월1회 이상 실시하지 않는 경우
미흡	영유아 안전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하지 않고(3가지 미만) 소방훈련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안전교육 계획 자체를 수립하지 않았거나, 교육 실시기록이 없는 경우)

10-②	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표 설명

원장은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근거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지침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시·도 및 시·군·구 등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시행할 때 적극 참여해야 함. 원장은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 등에서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확인 방법

문서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실시기록 확인(연1회 이상)
- 외부기관 교육 및 어린이집 자체교육, 온라인교육 등 모두 해당함
- 안전교육의 종류와 범위,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아동학대예방교육'과는 별개의 안전교육 1가지 이상 실시

평정 기준

우수	대부분(90%이상)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보통	일부(1/3미만) 보육교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미흡	대부분(1/3이상)의 보육교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10-③	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영유아 등·하원시 교사 및 보호자 인계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표 설명

영유아의 등·하원 시 반드시 보호자와 교사 간의 인계 과정이 필요하며, 보호자가 서면으로 제출한 '귀가동의서'에 따라 보호자 확인 후 인계해야 함. 또한 영유아를 다른 성인에게 인계할 때는 보호자의 전화 확인 또는 서명 확인이 필요함

*귀가동의서 필수기재사항: 영유아의 이름, 귀가 시 영유아를 인계받을 보호자의 이름, 관계 및 연락처, 보호자의 서명

확인 방법 문서, 관찰

☞ 귀가동의서 등을 통해 인계과정에 대한 내용 확인
☞ 인계과정의 관찰(영유아를 혼자 귀가시키지 않아야 함)

평정 기준

우수	모든(현원의 90%이상) 영유아의 귀가동의서가 구비되어 있으며, 인계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보통	인계과정은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현원의 1/3미만) 영유아의 귀가동의서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미흡	대다수(현원의 1/3이상) 영유아의 귀가동의서가 누락되어 있거나, 혼자 등하원 하는 영유아가 있는 경우

11-①	차량 안전관리
	어린이집의 모든 통학차량의 신고필증을 구비하고, 차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표 설명

통학차량 운행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전세버스 운송 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차량도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함. 또한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8호 차량은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한정하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어린이집에서 운행 중인 모든 차량에는 차량 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갖추어야 하며,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확인 방법

문서

☞ 차량 신고필증이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

☞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평정 기준

※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경우 모든 항목 '우수' 평정

우수	모든 통학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 및 신고필증을 차량 내에 비치하고 차량안전검표에 의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보통	통학차량의 차량안전점검은 실시하였으나,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한 후 신고필증을 차량 내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미흡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 되지 않은 통학차량이 있거나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차량 안전관리
11-②	어린이집의 모든 통학차량은 차량안전설비(경광등, 차량용소화기, 차량용 구급상자, 개별 안전벨트 및 안전인증을 받은 영아용 보호 장구 등)를 갖추고 관리되고 있다.

지표 설명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유아와 교사는 개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함. 차량에는 경광등, 차량용소화기, 구급상자 등이 설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함

* 영아용 보호장구는 안전인증(KC)을 받고 영아에게 적합한 안전인증검사기준(W1, W2)을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8호 어린이집에서 운행 중인 모든 차량에는 차량 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갖추어야 하며,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차량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여야 하고, 36개월 미만 영아를 탑승시키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확인 방법

관찰

☞ 차량 안전설비(경광등, 소화기, 구급상자, 보호장구 등)의 구비 여부

☞ 안전설비의 정상적인 작동 및 사용 여부 등 확인

평정 기준

우수	통학차량이 차량안전설비를 모두 갖추고 정상적으로 작동·관리되는 경우
보통	차량안전설비의 구비 또는 작동·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한두 가지 있는 경우
미흡	차량 안전설비의 구비 또는 작동·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세 가지 이상 있는 경우

11-③	차량 안전관리
	차량운행 시 보육교직원이 동승하여 영유아를 안전하게 인도하고 있으며, 차량안전수칙을 부착하여 숙지(등·하원 지도 교직원과 차량운전자) 하고 있다.

지표 설명

차량운행 시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동승하여야 하며,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부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등·하원 지도 교직원과 차량운전자는 이를 숙지하여야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8호 어린이집에서 운행 중인 모든 차량에는 차량 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갖추어야 하며,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차량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여야 하고, 36개월 미만 영아를 탑승시키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확인 방법

문서, 면담

☞ 차량안전수칙을 부착하며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

평정 기준

우수(4점)	차량운행시 보육교직원이 동승하고, 차량 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동승자(보육교사 등)가 이를 숙지하고 있음
보통	차량운행시 보육교직원이 동승하나, 차량 내에 안전수칙이 부착되어 있지 않거나 동승자(보육교사 등)가 이를 숙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미흡	차량운행시 보육교직원이 동승하지 않은 경우

12-①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외부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기관 자체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표 설명

어린이집 원장은 모든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대체교사, 차량기사 등)에 대하여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 및 이수하도록 함. 외부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교육(온라인 교육 포함) 또는 어린이집 자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근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8 보육교직원는 영유아에게서 아동학대의 징후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아동복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14조(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확인 방법 문서

☞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외부기관 또는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는지 기록 확인(연1회 이상)
- 외부기관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인 경우는 수료증(이수증) 등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 확인
- 어린이집 자체교육 시는 교육 내용 관련 기록으로 확인
(교사교육보고서나 운영일지 등에서 확인)

평정 기준

우수(4점)	모든(90%이상)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외부기관 또는 기관 자체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보통	일부(1/3미만) 보육교직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
미흡	대다수(1/3이상) 보육교직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

12-②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을 알고 있으며, 아동 학대 발견 시 신고 및 상담전화를 이용할 줄 안다.

지표 설명

보육교직원은 신고의무자로서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112)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함

❑ 근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확인 방법

면담

☞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학대피해아동 발견 시 대처방법,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숙지여부 확인

평정 기준

우수(4점)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역할을 알고, 신고 및 상담전화를 숙지하고 있는 경우
보통	일부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역할을 알지 못하거나, 신고 및 상담전화를 숙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미흡	대다수 보육교직원이 신고의무자로서 역할을 알지 못하고, 신고 및 상담전화를 숙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12-③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
	가정에서 아동권리존중(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해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표 설명

가정에서도 아동권리존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서는 가정통신문이나 오리엔테이션 자료 등을 활용하여 아동권리존중 방법에 대해 안내함

❑ 근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확인 방법

문서

☞ 가정에서의 아동권리존중 실천 방법 안내(가정통신문이나 오리엔테이션 자료 활용)

평정 기준

우수	가정에서 아동권리존중(아동학대예방 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한 자료가 있는 경우
보통	가정에서의 아동권리존중(아동학대예방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미흡한 경우
미흡	가정에서의 아동권리존중(아동학대예방 등)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는 경우

Ⅳ. 서 식

부모모니터링 결과보고서

<table>
<tr><td>어린이집명</td><td colspan="3"></td></tr>
<tr><td>소 재 지</td><td colspan="3"></td></tr>
<tr><td>유 형</td><td colspan="3">□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td></tr>
<tr><td>원 장</td><td></td><td>아동현황</td><td>정원/현원:____/____</td></tr>
<tr><td>방문일자</td><td>2016년 월 일</td><td>방문시간</td><td>: ~ :</td></tr>
<tr><td rowspan="2">방 문 자</td><td>(부모) (서명)</td><td rowspan="2">어린이집
확 인 자</td><td rowspan="2">(원장) (서명)</td></tr>
<tr><td>(전문가) (서명)</td></tr>
</table>

OO 시·군·구

OO과

〔　　〕어린이집 모니터링결과

영역	항목	모니터링 결과	총점
Ⅰ.건강관리	1.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　　) / 4점	(　　)점
	2. 응급조치체계	(　　) / 8점	
Ⅱ.급식관리	3. 식단 및 영양 관리	(　　) / 10점	(　　)점
	4. 조리 관리	(　　) / 4점	
	5. 식재료 관리	(　　) / 10점	
Ⅲ.위생관리	6. 급식 위생관리	(　　) / 8점	(　　)점
	7. 조리실 청결	(　　) / 10점	
	8. 시설·비품 위생	(　　) / 12점	
Ⅳ.안전관리	9. 물리적 환경에 대한 관리	(　　) / 10점	(　　)점
	10. 인적 환경에 대한 관리	(　　) / 6점	
	11. 차량 안전관리	(　　) / 8점	
	12.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	(　　) / 10점	
총계	**12 항목**	**(　　) / 총 100점**	
총괄 의견			
특이 사항			

※ 특이사항에는 즉시 조치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 경우와 모니터링시 특별한 사항을 기록함

Ⅰ. 건강관리

항목	관찰 내용	평가(√)			현장개선지도	비고
		우수	보통	미흡		
1.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①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필수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을 안내한다.	(2)	(1)	(0)		
	②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건강검진을 연 1회 실시하고, 그 증빙서류를 보관한다.	(2)	(1)	(0)		
2. 응급조치체계	① 영유아에게 위급상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응급의료기관 이송체계를 갖추고 있다.	(2)	(1)	(0)		
	② 사용기간 내의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비치하고 있다.	(2)	(1)	(0)		
	③ 식중독 및 감염병 등이 의심되는 증상 발견 시 시군구청 보육담당부서 및 보건소에 신고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갖추고 신고한다.	(2)	(1)	(0)		
	④ 영유아의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2)	(1)	(0)		

Ⅱ. 급식관리

지표	관찰 내용	평가(√)			현장개선지도	비고
		우수	보통	미흡		
3. 식단 및 영양 관리	①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대로 제공한다.	(2)	(1)	(0)		
	② 간식이 오전과 오후로 다양하게 제공되며, 신선한 과일 및 채소 등을 주 3회 이상 간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2)	(1)	(0)		
	③ 음식의 조리(크기, 맛 등)가 영유아가 먹기에 적절하며, 충분한 양의 급·간식이 제공된다.	(2)	(1)	(0)		
	④ 특별한 음식(식품 알레르기 등)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에게는 그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한다.	(4)	(2)	(0)		
4. 조리 관리	① 급식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한다.	(2)	(1)	(0)		
	② 당일에 조리한 음식은 당일에 소비하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2)	(1)	(0)		
5. 식재료 관리	① 식재료 보관규정(냉동·냉장·실온보관, 입고날짜,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고 있다.	(4)	(2)	(0)		
	② 식단표상의 식재료는 원산지 표기대로 구입하고 있다.	(2)	(1)	(0)		
	③ 식재료 보관장소는 청결하고 위생적이며, 식품과 소모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4)	(2)	(0)		

Ⅲ. 위생관리

지표	관찰 내용	평가(√)			현장개선지도	비고
		우수	보통	미흡		
6. 급식 위생 관리	① 조리직원은 위생모, 위생복, 위생화 등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조리한다(장신구 착용 불가).	(4)	(2)	(0)		
	② 급·배식 도구가 청결하고 급·배식과정이 위생적이다.	(2)	(1)	(0)		
	③ 식수, 우유, 모유, 이유식 등 관리가 위생적이다(컵, 젖병 등을 소독 관리하여 청결하게 사용).	(2)	(1)	(0)		
7. 조리실 청결	① 조리실과 조리도구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4)	(2)	(0)		
	② 칼과 도마를 어류, 육류, 채소류 별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2)	(1)	(0)		
	③ 조리실에 후드나 환풍기, 냉·난방기, 방충망 등이 설치되어 있고, 제대로 작동하며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다.	(4)	(2)	(0)		
8. 시설·비품 위생	① 어린이집의 모든 공간(보육실, 현관, 복도, 계단, 화장실, 세면실)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다.	(2)	(1)	(0)		
	② 보육실의 놀잇감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다.	(2)	(1)	(0)		
	③ 영유아가 개별 침구를 사용하고, 청결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다.	(2)	(1)	(0)		
	④ 영유아가 사용하는 수건, 칫솔, 칫솔컵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다.	(4)	(2)	(0)		
	⑤ 쾌적한 보육실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기,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다.	(2)	(1)	(0)		

Ⅳ. 안전관리

지표	관찰 내용	평가(√)			현장개선지도	비고
		우수	보통	미흡		
9. 물리적 환경 관리	① 실내외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에 안전장치(끼임 방지, 모서리보호대 등)가 되어 있고, 위험요소가 없으며, 실내외 놀잇감이 영유아에게 안전하다.	(4)	(2)	(0)		
	② 영유아가 사용하는 세면대 수도와 정수기 등에 화상위험이 없도록 안전조치가 되어 있다.	(2)	(1)	(0)		
	③ 위험한 물건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	(2)	(1)	(0)		
	④ 화재 등 긴급 사태를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가 잘 관리되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갖추고 있다.	(2)	(1)	(0)		
10. 인적 환경 관리	① 영유아 안전교육과 소방훈련을 계획하여 실시하고 있다.	(2)	(1)	(0)		
	②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1)	(0)		
	③ 영유아 등·하원시 교사 및 보호자 인계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	(1)	(0)		
11. 차량 안전 관리	① 어린이집의 모든 통학차량의 신고필증을 구비하고, 차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	(1)	(0)		
	② 어린이집의 모든 통학차량은 차량안전설비(경광등, 차량용소화기, 차량용 구급상자, 개별 안전벨트 및 안전인증을 받은 영아용 보호 장구 등)를 갖추고 관리되고 있다.	(2)	(1)	(0)		
	③ 차량운행 시 보육교직원이 동승하여 영유아를 안전하게 인도하고 있으며, 차량안전수칙을 부착하여 숙지(등하원 지도 교직원과 차량운전자) 하고 있다.	(4)	(2)	(0)		

지표	관찰 내용	평가(√)			현장개선지도	비고
		우수	보통	미흡		
12. 아동학대 예방조치	①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외부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기관 자체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4)	(2)	(0)		
	②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의 무자로서의 역할을 알고 있으며, 아동 학대 발견 시 신고 및 상담전화를 이용할 줄 안다.	(4)	(2)	(0)		
	③ 가정에서 아동권리존중(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해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2)	(1)	(0)		

컨설팅 결과보고서

어린이집명			
소 재 지			
유 형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원 장		아동현황	정원/현원:_____/_____
방문일자	2016 년 월 일	방문시간	: ~ :
컨설턴트	(서명)	어린이집 확 인 자	(원장) (서명)

OO 시·군·구
OO과

(　　)어린이집 컨설팅 결과

(시군구 :　　어린이집 :　　모니터링 점수:　　)

영역	항목	컨설팅 주요내용
Ⅰ.건강관리	1.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2. 응급조치체계	
Ⅱ.급식관리	3. 식단 및 영양관리	
	4. 조리 관리	
	5. 식재료 관리	
Ⅲ.위생관리	6. 급식 위생관리	
	7. 조리실 청결	
	8. 시설·비품 위생	
Ⅳ.안전관리	9. 물리적 환경에 대한 관리	
	10. 인적 환경에 대한 관리	
	11. 차량 안전관리	
	12.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	
총계	컨설팅 항목수	(　　)
총괄 의견		

V. 부 록

부록 1 2016 부모모니터링단 지표 주요 개정사항

구분	변경 전(2015년)	변경 후(2016년)
건강관리		
1-①	(확인방법) 문서	(확인방법) 문서, 면담
1-②	(지표설명) *보육실습생과 어린이집에 매일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기타 인력에 대해서도 건강검진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	(지표설명) *보육실습생과 어린이집에서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자, 어린이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 특별활동 강사, 노인일자리 파견 파견자에 대해서도 건강검진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
2-②	(지표설명) <비상약품 종류의 예시> 표	(지표설명) <비상약품 종류의 예시> 표 변경
2-③	(평정기준) - 보통: 보육담당부서 및 보건소 연락망 비치, 감염병 발생 시 신고 의무사항 인지 중 한 가지 미충족 - 미흡: 보육담당부서 및 보건소 연락망 비치, 감염병 발생 시 신고 의무사항 인지 모두 미충족	(평정기준) - 보통: 보육담당부서 및 보건소 연락망을 포함한 구체적인 관리대책(안) 비치, 감염병 발생 시 신고 의무사항 인지 중 한 가지 미충족 - 미흡: 보육담당부서 및 보건소 연락망을 포함한 구체적인 관리대책(안) 비치, 감염병 발생 시 신고 의무사항 인지 모두 미충족
2-④	(확인방법) 문서	(확인방법) 문서, 면담
위생관리		
6-①	(지표) 조리직원은 위생모, 위생복 등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조리한다(장신구 착용 불가). (확인 방법) ☞조리 직원(취사부, 조리사, 영양사 등)이 위생모와 위생복 등을 올바르게 착용하였는지 여부	(지표) 조리직원은 위생모, 위생복, 위생화 등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조리한다(장신구 착용 불가). (확인 방법) ☞조리 직원(취사부, 조리사, 영양사 등)이 위생모와 위생복, 위생화 등을 올바르게 착용하였는지 여부 (평정 기준) 위생화

구분	변경 전(2015년)	변경 후(2016년)
6-②	(확인방법) ☞급·배식 전용도구의 위생상태 및 배식과정의 위생 상태(개별 음식별로 집게 또는 일회용 장갑을 사용하여 배식, 개별 식기 사용, 테이블 청결 상태 등) 확인	(확인방법) ☞급·배식 전용도구의 위생상태 및 배식과정의 위생 상태(개별 음식별로 집게 또는 일회용 장갑을 사용하여 배식, 개별 식기 사용, 테이블 청결 상태, 복장의 청결상태 등) 확인
안전관리		
9-①	(확인 방법) ☞영아가 사용하는 놀잇감의 크기(직경3.5cm 이상, 길이 5.5cm 이상)는 적정한지 등 확인	(확인 방법) ☞영아가 사용하는 놀잇감의 크기(직경3.5cm 이상)는 적정한지 등 확인
10-①	(지표 설명) (확인 방법) ☞영유아 안전교육(3가지 이상) 및 소방훈련의 계획 및 실시기록 확인 -소방훈련(비상대피)은 매월 시행	(지표 설명) 보육사업안내 변경 내용 수정 (확인 방법) ☞영유아 안전교육(3가지 이상) 및 재난 대비 훈련의 계획 및 실시기록 확인 -소방훈련(재난 대비 훈련)은 매월 시행
11-③	차량운행 시 보육교직원이 동승하고 있으며, 차량안전수칙을 비치하여 숙지(등·하원 지도 교직원과 차량운전자) 하고 있다.	차량운행 시 보육교직원이 동승하여 영유아를 안전하게 인도하고 있으며, 차량안전수칙을 부착하여 숙지(등·하원 지도 교직원과 차량운전자) 하고 있다. (11-④와 통합)
11-④	영유아 등·하원일지를 작성하여 차량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안전하게 인도한다	(삭제)

「2016년도 부모 모니터링단 교육자료」는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 법령, 보육사업안내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부모모니터링단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된 것입니다.

본 자료는 부모모니터링단의 활동방법에 관한 표준안을 제시한 것으로서, 부모모니터링단의 운영 또는 교육을 위한 자료로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